

챔피언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챔피언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법인 등 제한이 없다.

제4조 【가입 및 해지】

- ①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 ②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 및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 ④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등록된 출금계좌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⑤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 월, 일단위로 정할 수 있다. (단, 월단위 가입은 가입기간이 2월 이상이어야 하며, 1년 확정형 가입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우체국장 우대이율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 ④ 우수고객 우대이율은 개인, 개인사업자 고객에 대하여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우수고객 등급별, 가입기간별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가입기간	우수고객 등급별 우대이율	
	Premium	SS-MVP, S-MVP, MVP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0.10%p	연 0.05%p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 0.15%p	연 0.10%p
24개월 이상	연 0.20%p	연 0.15%p

- ⑤ 급여성 이체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 시(재예치 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우체국 급여성이체 약정 고객)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2. (우체국 급여성이체 약정 고객)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3. (우체국 급여성이체 미약정 고객)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급여성 이체 우대이율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0.05%p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 0.10%p
24개월 이상	연 0.15%p

※ 우수고객 또는 급여성 이체 우대이율 둘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하며, 모두 충족시 우수고객 우대이율 적용

- ⑥ 「우체국 주니어우대 자유적금」을 만기해지하고 동일자에 이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연 0.05%p 적용한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이율적용방식은 확정금리형, 1년 확정형으로 한다.
- ② 이 예금의 확정금리형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한다.

- ③ 이 예금의 1년 확정형은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의 1년 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매 1년간 적용한다. (단,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응당일로 하며,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응당일로 한다)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단, 1년 확정형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연복리로 이자 계산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

창구 가입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만기일에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

창구 가입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를 통해 이자를 지급 ※ 단, 월 이자 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직전 영업일에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모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

-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 ④ 이 예금의 중도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만기일 전 2회 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월단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월이자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 중도이자지급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일괄지급 하여야하며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의 일부지급은 불가능하다.
- 중도이자지급이 있었던 경우에 만기해지 시 지급이자잔액 잔여기간에 대하여 만기일시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 【분할해지】

- ① 가입기간(재예치기간) 동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가입(재예치) 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신규 가입(재예치)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분할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 【자동 재예치】

- ① 이 예금은 만기일에 원리금(또는 원금)을 2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 서비스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월·연단위로 가입, ‘확정금리형’ 이율 적용방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 재예치 금액은 ‘원금’ 또는 ‘원리금(원금+세후이자)’ 중 선택 가능하며 원금만 재예치하는 경우 이자는 본인명의 수시입출식 예금(모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인 경우 ‘원금’만 재예치 가능
 - ※ 압류, 사고신고,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자동 재예치가 불가함
 3. 적용이율은 자동 재예치 시점의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4.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변경), 해지 가능
 - ※ 단, 이 예금 판매중지 시 재예치 신청 불가
-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15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출,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5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